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3322
------	------

2025.12.23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0월 18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25.12.18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정상훈)

가. 제안이유

-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. AI·SW융합교육원 신설(안 제7조제1항제5호)

- 첨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마련

2. 글로벌 서울사회공헌단 폐지(안 제7조제1항제5호)

- 사회공헌 기능을 ‘기획처’ 산하 ‘대외협력과’로 이관하여 대외 협력기능과의 연계성 및 실행력 강화

3. 체육관 명칭을 스포츠건강진흥원으로 변경(안 제7조제1항제7호)

- 건강·체육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 변경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개정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대학교(이하 “시립대”)에 AI·SW융합교육원을 신설하고, 글로벌사회공헌단을 폐지하며, 체육관의 명칭을 스포츠건강 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음.

2. 공립대학의 조직 관련 규정

- 먼저 공립대학의 조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, 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는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,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,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서울시가 설립·경영하고 있는 공립대학인 시립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직속기관이며, 동 규정 제17조에서는 공립대학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되 시·도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대의 조직에 대하여 동 조례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시립대 학칙에서 정하고 있음.
- 이 중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는 시립대의 설치 근거와 위치, 총장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밖의 시립대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,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 및 대학원 학부(과),

학생정원, 학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
- 그리고 동 조례에서는 ▶총장 및 부총장, ▶대학, 학과, ▶대학원, ▶부속 기관 및 부설연구기관, ▶직속기관(인권센터) 등의 시립대 조직에 대한 대략적인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은 동 조례에 명시된 조직의 업무분장과 기능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립대 부속기관인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을 폐지하고 AI·SW융합교육원을 신설하며, 체육관의 명칭을 스포츠건강진흥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, 그 후속 절차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38조의5(글로벌서울 사회공헌단) 및 제38조의8(체육관)도 개정될 예정임.

3.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

(1) AI·SW융합교육원 신설 및 글로벌사회공헌단 폐지(안 제7조제1항제5호)

-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는 대학의 교육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하고, 인공지능(AI)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‘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음.
- 이러한 ‘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’은 소프트웨어학과를 보유한 국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참여대학을 선정하여, 선정된 대학은 최장 8년(4+2+2)간 매년 20억원(1년차 10억원)을 지원받게 됨.

<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개요 >

- 사업기간 : 2025년 ~ 2032년 (4+2+2년) ※ 계속 지원 여부 단계별 평가
- 지원규모 : 8년간 국비 총 150억원(1년차 10억원, 2~8년차 20억원)
- 사업목적 : SW중심으로 대학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SW중심 전문·융합인재 양성
- 필수사항 : AI·SW융합교육을 총괄하는 조직을 대학 본부 내 설치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5-074호)

- 그리고 시립대는 2025년에 동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(2025.5.9.)되었으며, 향후 단계별 성과평가와 학부·학과 간 융합 교육 체계 구축 등에 대응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에서 AI·SW융합교육원을 신설하려는 것임.
-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필수 운영 사항 12개 항목 중에 AI·SW융합교육을 총괄하는 조직을 대학 본부 내에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고, 장기간 지속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담 조직인 AI·SW융합교육원을 설치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됨.
- 한편 시립대는 별도 조직으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획처(대외협력과)로 이관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바,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은 조직 효율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직 신설 이후 1년 5개월만에 폐지된다는 점에서 시립대는 향후 부속기관의 신설 및 폐지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.

(2) '체육관'을 '스포츠건강진흥원'으로 변경(안 제7조제1항제7호)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립대의 체육 업무 소관부서인 '체육관'의 명칭을 '스포츠건강진흥원'으로 변경하고 있음.

- 시립대 체육관은 100주년 체육관 및 대운동장, 실내·외 테니스장, 웰니스센터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, 각 시설별로 대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
< 시립대 체육관 운영 현황 >

시설명	대시민 프로그램 운영 현황
100주년 체육관	UOS 스포츠 프로그램(골프, 필라테스) 운영
	실내 체육관 대여
대운동장	대운동장 잔디구장 대여
실내·외 테니스장	테니스 코트 예약 및 테니스 레슨 운영
웰니스센터	UOS 스포츠 프로그램(테니스, 스쿼시, GX, 피트니스) 운영

- 그동안 시립대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각종 체육 프로그램의 부서 명칭을 ‘체육관’으로 사용했으나 ‘체육관’은 체육시설에 한정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시립대 체육관은 지역주민 및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스포츠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부속기관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의 변경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.
- 이에 따라 시립대는 다른 대학에서 운영되는 유사부서의 명칭¹⁾을 참고하고 시립대 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스포츠과학과의 내부논의, 2024년 총장 업무보고 등을 거쳐 ‘체육관’의 명칭을 ‘스포츠건강진흥원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1) 서울대: 스포츠진흥원, 고려대·연세대: 체육위원회, 성균관대: 스포츠단, 동국대: 대학스포츠실, 제주대: 체육진흥센터

VI. 심사결과 : 「원안 가결」

(재석의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

- 황유정 위원 - 조직개편에는 공감하나 글로벌사회공헌 담당 부서는 존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후 조직 개편시 부서 재설치를 요청함.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AI · SW융합교육원 신설(안 제7조제1항제5호)

- 첨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마련

나.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폐지(안 제7조제1항제5호)

- 사회공헌 기능을 '기획처' 산하 '대외협력과'로 이관하여 대외협력 기능과의 연계성 및 실행력 강화

다. 체육관 명칭을 스포츠건강진흥원으로 변경(안 제7조제1항제7호)

- 건강 · 체육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(학교의 조직)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5. 8. 29. ~ 9. 1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최병찬 (☎ 2133-673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3항 후단 중 “「교육공무원법 임용령」 제12조의2”를 “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2조의2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AI·SW융합교육원

7. 스포츠건강진흥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총장) ① · ② (생 략)	제3조의3(총장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「 <u>교육공무원법</u> 임용령」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	③ ----- --. ----- ----- ----- 「 <u>교육공무원임용령</u> 」 제12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)	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)
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	① ----- 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	5. <u>AI · SW융합교육원</u>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체육관	7. <u>스포츠건강진흥원</u>
8. ~ 12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시립대 조직개편 사항으로,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이 없어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6급 최병찬(☎ 2133-6739)